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 용 한

2021년 8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남진열

유용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유용한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고관우



위 원

남진열



위 원

김상미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21년 8월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Welfare Agency Workers in Jeju

You Yong-Han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인권과 인권감수성.....	6
1) 인권의 개념.....	6
2) 인권감수성의 개념.....	7
3) 인권감수성에 대한 선행연구.....	9
2. 인권감수성 영향 요인.....	11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1
2) 직무관련 요인.....	12
3) 심리적 요인.....	13
(1) 공감능력.....	13
(2) 자아존중감.....	14
III. 연구방법.....	16
1. 연구모형.....	16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6
3. 측정도구.....	17
1) 조사도구 구성.....	17
2) 종속변수.....	18
(1) 인권감수성.....	18
3) 독립변수.....	19
(1) 공감능력.....	19
(2) 자아존중감.....	20
(3) 직무요인.....	20
4) 통제변수.....	21
4. 분석방법.....	21

IV. 연구결과	22
1. 연구 참여자의 통제변수에 따른 특징	22
2. 변수들의 기술통계	24
1) 주요 변수들의 특성	23
2) 에피소드에 따른 인권감수성 하위요인 특성	25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26
4. 변수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27
1) 직무요인, 통제변수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27
2) 직무요인에 따른 상황지각능력 차이	29
3) 직무요인에 따른 결과지각능력 차이	29
4) 직무요인에 따른 책임지각능력 차이	30
5) 직무요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31
5.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1) 상황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2) 결과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4
3) 책임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6
4)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8
V. 결론 및 제언	40
1. 연구결과 요약	40
2. 연구의 함의	41
3. 제언 및 한계점	43
참고문헌	45
Abstract	49
<부록> 설문지	52

표 목차

<표 1> 조사도구 구성.....	18
<표 2> 연구에서 사용된 5가지 에피소드.....	19
<표 3>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3
<표 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24
<표 5>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하위영역 특성.....	25
<표 6>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26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요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28
<표 8> 직무요인에 따른 상황지각능력 차이.....	29
<표 9> 직무요인에 따른 결과지각능력 차이.....	30
<표 10> 직무요인에 따른 책임지각능력 차이.....	31
<표 11> 직무요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31
<표 12> 상황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
<표 13> 결과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
<표 14> 책임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7
<표 15>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9

그림 목차

[그림 1] 인권감수성 검사 모형과 구성요소.....	9
[그림 2] 연구모형.....	16

국문초록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유 용 한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남 진 열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인권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인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조사를 위해 제주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하고 2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5점 만점에 4.09(SD=.50)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상황지각능력은 4.19(SD=.54), 결과지각능력은 4.13(SD=.58), 책임지각능력은 3.94(SD=.55)로 나타나 상황지각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인권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직무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학력과 서비스대상, 직종이 인권감수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이하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서비스대상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가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학력, 사회복지 경력과 심리적 요인으로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감수성 하위요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상황지각능력에는 성별과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지각에는 학력, 서비스대상,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능력에서는 학력, 사회복지분야 경력,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권감수성 하위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 학력, 근무경력을 고려한 인권감수성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적 요인 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 역시 필요하며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인권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에서 인권 담론이 큰 흐름을 형성한 지 약 이십여 년 정도 되었다. 21세기와 인권의 시대가 거의 일치한다. 인권은 이제 정의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은유하는 대표적인 표제어로 손꼽힌다. 또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인권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인권으로 말문을 연다(조효제, 2020).

인권(人權)은 인간과 권리의 합성어이다. ‘인권’이란 지구상에 살고 있는 78억 인구 중에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사회 속에 속한 개인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권리(權利)’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해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한다. 즉, 인권이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힘 또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사람답게 생활하는 환경은 인권보장에서 비롯된다. 사회 혹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가 인권이다. 국가발달 이론에 근거한 오늘날 행정국가의 최대 목표이면서 희망인 복지국가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 사회규모가 커지고 구성원 또한 늘어남으로써 일을 집행하는 행정개념이 확대되고 그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수요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가 폭증하고 희망수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정승재, 200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은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로 국가적인 관심의 대

상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로 법제화 되었다(경기복지재단, 2015).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67.0%에 달하고,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8.0%로 조사되었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사회복지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사회정의 등이 인권의 가치와 같다.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의 인권의 이상을 여러 형태로 실현하고 보장해주는 분야이다(경기복지재단, 2020).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 제공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다(이영순, 2017).

인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없이는 인권의 보장을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권옹호 행동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인권은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차원까지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천과 행동에 앞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명석, 2008).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지식 이상의 감정과 행동 의도로 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대상자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김자영, 2011).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떠한 행동선택이 가능하며 그러한 행동선택이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심리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낮을 경우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이들의 권리가 적절하게 옹호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영순, 2017).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감수성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권에 관한 이해가 낮고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인권문제를 방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관식(2014)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올바른 인권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피교육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이념을 수용하고 지각하는 인권감수성을 파악하여 인권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감수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등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직무 관련 요인 중에서는 근무경력, 시설유형, 인권교육, 직종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공감 능력, 자아존중감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정선영, 2006; 박정선, 2007; 기순임, 2011)에서는 성별이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끼치며 여성이 남성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박정선(2007), 이연우(2011), 김지호(2011), 이은희(2017)의 연구에서 30대가 가장 인권감수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었고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권감수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가 많았다(이하늬, 2014; 이은희, 2017; 장바론, 2017). 종교와 관련해서는 기순임(2011), 이규란(2012)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인 중 사회복지분야 경력과 관련해서는 정선영(2006), 박정선(2007), 김현진(2010), 이규란(2012)의 연구에서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과 관련해서는 장바론(2017)의 연구에서 장애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종사자간 인권감수성에 차이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인권교육경험은 인권감수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박정선, 2007; 이규란, 2012; 김동선, 2014)

심리적 요인 역시 인권감수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정선영(2006)과 김미정(2017)은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요인 중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권감수성은 어떠한 사안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과정이므로 인권의식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강지영, 2002; 원형은, 2008; 주호경, 2012). 그러므로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권감수성이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므로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 중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를 통해 인권감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인권 또는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이나 인권침해는 다루기에 민감한 주제라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재활교사, 요양보호사 등 특정한 직종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복지 영역이나 장애인복지 영역 중 사회복지시설의 한 영역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영역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직무요인과,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제주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특성 이외에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와 같이 서비스 대상이 다르거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와 같이 다른 직종 간의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이나 인권컴플라이언스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과 하위영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인권감수성에 직무요인과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수준과 하위영역별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권과 인권감수성

1) 인권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이다. 그런데 권리라는 단어는 원래 ‘right’를 번역한 것이다. right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최현, 2008).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되어야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박정선, 2007).

Ife는 인권에 대해 1~3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제1세대는 공민권과 정치권으로 투표, 집회·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고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제2세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교육, 주거·의료, 고용, 적정소득, 사회보장 등에 관한 권리이다. 제3세대는 집합적 권리로 경제개발과 성장에 대한 권리, 경제성장의 혜택, 사회적 조화, 건강한 환경 등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송정화, 2014).

국제사회사업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인권을

위한 국제정책(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을 통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는 각자를 위한 도덕적 배려로서 정당화된다. ② 각각의 개인은 자립의 권리가 있으며, 타인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대화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사회는 구성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따른 소신을 가져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개인 및 집단, 지역사회, 전체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개인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 ⑥ 사회복지사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 사회계층,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 취향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 없이 가장 최선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장바론, 2017).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정책이나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 문제와 대응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지침과 연구들에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을 만큼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다.

2) 인권감수성의 개념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은 학술적인 개념으로 윤리적 민감성, 인권감수성 등 연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지영, 2016). 최명민(2005)은 특정 상황에 있는 윤리적 이슈를 규명하고 다양한 행위의 과정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윤리적민감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김충희(2004)는 인권적 옹호행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사고과정으로 인권민감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국간인권위원회의 인권감수성 개념을 인용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박정선, 2007; 방주현, 2008; 이규란, 2013; 김동선, 2014; 장바론, 2017; 김미정, 2017; 이은희, 2017, 김성섭, 2019).

인권감수성이란 인권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들에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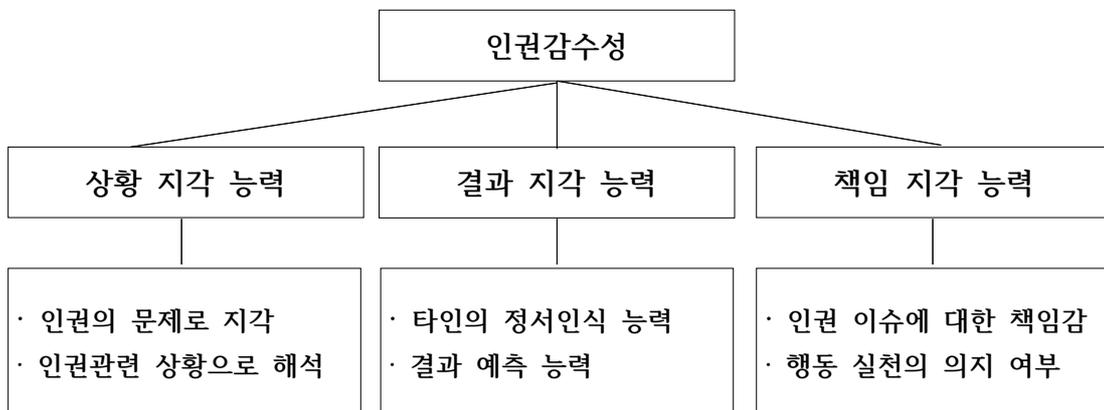
인권침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인권옹호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인식조차 할 수 없다면 인권옹호적인 행동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인권감수성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의식과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은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식은 지식적인 측면 즉, 인권침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개념이라면 인권감수성은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책임성 기반의 행동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의식이 비교적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인권감수성은 인권 관련 상황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적용되는 보다 정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조운정, 2006).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감수성 지표를 도덕적 민감성을 근거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인권감수성은 도덕민감성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도덕 심리학자 Rest의 4구성 요소 모형(Four-Component Model)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제1요소는 도덕민감성에 대한 내용으로, 주어진 상황을 도덕적인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제2요소는 도덕적 판단력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제3요소는 도덕적 동기화로서,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요소는 도덕적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판단한 도덕적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용기나 의지 등의 자아 강도를 의미한다. 이 4가지 구성 요소는 인지와 정서 모두를 포함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행동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았다(김미정, 2017).

Volker는 도덕민감성을 서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 가지 일반적인 구성요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의한다. 이들 세 과정은 (1)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지각, (2)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지각, (3)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지각을 포함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3가지 하위체계(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로 구분하였다. 3가지 하위체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지각능력이란 인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인권 상황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결과지각능력이란 인권문제 발생 상황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지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이 행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해 보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타인의 정서적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된다. 셋째, 책임지각능력이란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성 있는 행동이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능력이다. 위와 같이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로는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이 있으며(김미정, 2017), 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

[그림 1] 인권감수성 검사 모형과 구성요소

인권감수성 모형을 실천에 맞게 설명하자면, 인권문제를 접한 상황에서 상황지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옹호행위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인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어느 한가지 요소가 결여될 경우에는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요소별 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인권감수성에 대한 선행연구

2000년대 이후 인권이 정치적인 개념에서 사회·문화적인 개념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후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되고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이은희, 2017).

인권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아직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탐색 수준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집단 토의학습이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김규연, 2005),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인권감수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다(신옥임, 2006).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이상애, 2009)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경험 정도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도 있었다(김자영, 2012). 통합교육 여부에 따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인권감수성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김영환, 2016)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인권감수성과 관련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많았다.

경찰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정의롬, 2011; 김재민, 2013; 김영중, 2014; 설충기, 2014; 김윤나, 2015, 김정아, 2015; 오선영, 2016, 김성섭, 2019),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 또는 인권감수성 교육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는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정원주, 2008; 이미래, 2012; 오선영, 2016).

인권감수성과 관련하여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파악하는 연구(김충희, 2004)가 있었고 정선영(2006)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민감성이 인권옹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주현(2008)은 정신보건종사자의 치료집단과 비치료집단간 인권감수성 차이를 비교하였고 김동선(2014)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인권감수성에 의사결정유형 및 근무환경 등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은희(2017)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직무요인 등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인권감수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정선(2007)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과 하위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결과지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하였고 기순임(2011)은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역시 인권감수성과 하위요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장바론(2017)과 김미정(2017)은 각각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와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하위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직무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정의식(2019)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김민식(2019)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옹호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 인권감수성 영향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된 연구(정선영, 2006; 박정선, 2007; 기순임, 2011; 이은희, 2016)가 있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의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김충희, 2004; 김기수, 2006; 조윤정, 2006; 원형은, 2008; 김동선, 2014).

연령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0대가 가

장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많았으며(박정선, 2008; 이연우, 2011; 김지호, 2011; 이은희, 2017). 원형은(2008)의 연구에서는 40대 이상의 연령이 40대 미만의 연령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동선(2004)은 40대가 가장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현진(2010)과 이규란(201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영, 2010; 기순임, 2011; 이연우, 2011; 이규란, 2012; 김동선, 2014; 이은희, 2016; 김미정, 2017, 장바론, 2017).

종교와 관련해서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미정, 2017)가 있는 반면 이규란(2012)의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순임(2011)의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결혼상태와 관련해서는 김동선(2014)의 연구에서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은미(2018)의 연구에서는 미혼이 더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직무관련 요인

근무시설 형태에서는 생활시설 종사자보다 이용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선, 2014; 장바론, 2017). 근무 경력의 경우에는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근무경력이 길수록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김동선, 2014)가 있는 반면 박정선(2007)과 정선영(2006)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경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변소현·김봉선, 2016) 인권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기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순임(2011)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노인인권교육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인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한 인권감수성 연구에서는 대학 정규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기관에서 근무 중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근무 이후에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교육이나 이수가 전혀 없는 집단보다 인권감수성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3) 심리적 요인

(1) 공감능력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김윤희·김진숙, 2017).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느끼는 정서적 측면과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관점을 수용하는 인지적 측면, 그 밖에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되는 다차원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공감능력을 구성하는 관점의 차이가 반영되어 어떠한 측면을 더 부각시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천우영, 2016).

전재일(2002)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공감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작으로 공감을 강조하였다.

공감능력과 인권감수성 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영향요인을 공감능력으로 보고 있다(이승미, 2000; 강지영, 2002; 김혜정, 2002). 하경희(200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수준과 정서적 공감수준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정신보건영역에서는 정신보건간호사의 공감능력과 인권감수성에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으

며(여지영, 201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공감능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요인이라는 연구가 있다(이은희, 2017).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2017).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김미정, 2017).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은 자존감(Self-esteem),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신감(Self-confidence), 자존심(Self-worth) 등이며 연구자들에 의해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이영아·정현희, 1999).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과 스스로에 대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의 정도, 자기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이은희, 2017).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 및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발달 산물(정익중,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역량(competence)이고 둘째는 가치(worth)이다. 역량이란 어떠한 과업을 수행해내고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자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말한다. 스스로의 역량,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사람은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한다(이경민,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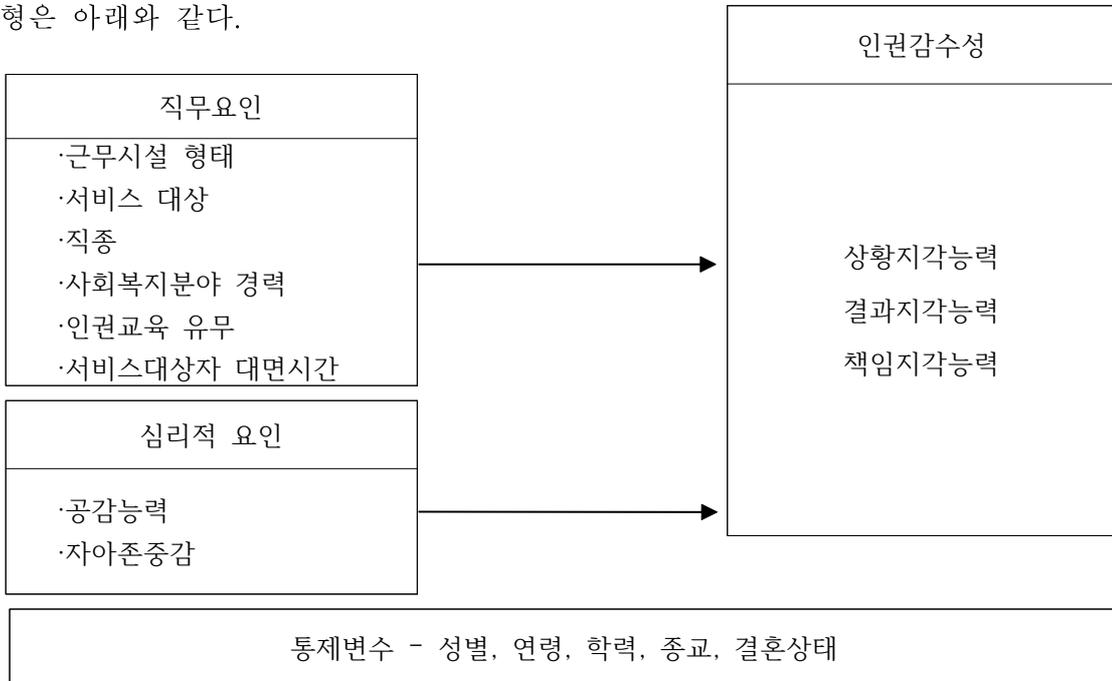
자아존중감과 인권감수성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많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인권감수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는 반면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은희(2016)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인권감수성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미정(201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요인과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자아존중감이며 종속변수는 인권감수성으로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및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5개, 장애인 거주 시설 10개 등 총 15개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205명과 노인요양시설 10개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위해 각 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계획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설문에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기관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설문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분한 후 재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305부였으며, 수거되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8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1) 조사도구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표 1>과 같이 구성되며 해당 도구에 대해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표 1> 조사도구 구성

변인	척도	항목 구성 및 문항수	신뢰도	출처
종속 변수	인권감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15문항(5가지 에피소드) - 상황지각능력 5문항 - 결과지각능력 5문항 - 책임지각능력 5문항 	.840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인권감수성 지표(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32문항 - 인지적 공감능력 10문항 - 정서적 공감능력 10문항 - 태도적 공감능력 12문항 	.942	
독립 변수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10문항 	.820	Rosenberg(1965) 하경희 외(2009)
	직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6항목 - 근무시설형태, 서비스대상자, 직종, 사회복지분야 경력, 인권교육경험 여부, 서비스 대상자 대면시간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5항목 -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상태 		

2) 종속변수

(1) 인권감수성

종속변수인 인권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인권감수성 지표는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상황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인권감수성 지표는 대학생 및 성인용의 경우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으

나 사회복지사의 현안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총 5가지 에피소드는 노인의 행복추구권, 불법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남녀 평등권, 사생활권, 장애인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가지 에피소드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에서 사용된 5가지 에피소드

에피소드 항목	관련 인권항목
가족회의	노인의 행복추구권
김씨의 구속	불법체포, 구속 당하지 않을 권리
감원대상	남녀 평등권
국가의료정보센터 건립	사생활권
의사의 고민	장애인 신체의 자유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사회복지실천과 관련 있는 5개의 에피소드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충희, 2004; 박정선, 2007; 서지숙, 2016; 김미정, 2017; 이은희, 2017, 장바론, 2017).

인권감수성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형식은 인권문제로 인한 갈등 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읽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의 점수가 비인권적 문항보다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인권감수성이 높다고 본다. 문항 별로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각 에피소드 별로 세개의 문항이 있으므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에피소드는 총 5개이므로, 응답자는 최저 0점에서 최고 75점까지 점수를 받게 된다.

3) 독립변수

(1)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김윤희(2016)의 공감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김윤희(2016)는 기존 척도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성인의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 한국 문화 기반의 공감개념 논의를 토대로 성인용 공감능력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김윤희(2016)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인지적 공감능력(역할수용, 감정파악), 정서적 공감능력(감정공명, 대리감정), 태도적 공감능력(진정성, 경청)을 설정하고, 인지적 공감능력 10문항, 정서적 공감능력 10문항, 태도적 공감능력 12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 척도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42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하경희(2009)가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인 Rosenberg Self-Esteem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확인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문항(1, 2, 4, 6, 7, 8)은 응답자가 표기한 점수로 환산하고 부정적 문항(3, 5, 9, 10)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총 점수는 10점에서 50점의 범위이다.

하경희(200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hronbach's α 값은 .820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값도 같은 수준인 .820으로 나타났다.

(3) 직무요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시설 형태에 따른 결과를 위해 ①생활시설, ②이용시설로, 서비스 대상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에 따라 ①노인, ②장애인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종은 ①사회복지사, ②요양보호사, ③기타로 하였으며 인권관련 교육 수강 여부는 ①있다, ②없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분야 경력과 근무시간 중 서비스 대상자 대면시간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상태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①여성, ②남성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력은 ①고졸이하,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 이상으로, 결혼상태는 ①미혼, ②기혼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정리와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 관련 요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요인,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직무요인, 심리사회적 요인과 인권감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통제변수에 따른 특징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시설유형, 서비스 대상, 직종, 사회복지분야 경력,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 여부, 근무시간 중 서비스 대상자 대면 시간 등 직무와 관련된 특성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진행되었다.

성별은 여성 195명(69.4%), 남성 86명(30.6%)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19명(6.8%), 30대 73명(26.0%), 40대 77명(27.4%), 50대 이상 112(39.9%)명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 54명(19.2%), 전문대졸 105명(37.4%), 대학 졸업 이상 122명(43.4%)으로 대학 졸업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없음 117명(41.6%), 불교 61명(21.7%), 천주교 59명(21.0%), 개신교 40명(14.2%), 기타 4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 82명(29.2%), 기혼 199명(70.8%)으로 기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설 형태는 생활시설 175명(62.3%), 이용시설 106명(37.7%)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에서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 83명(29.5%), 장애인 198명(70.5%)이었으며 직종으로는 사회복지사 198명(70.5%), 요양보호사 83명(29.5%)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경력은 4년 이하 83명, 5년 이상 8년 이하 62명, 9년 이상 12년 이하 75명, 13년 이상 61명으로 나타났다. 인권관련 교육 수강 여부는 있다 265명(94.3%)로 대부분 인권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없다 16명(5.7%)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서비스 대상자 대면 시간은 3시간 이하 76명(27.0%), 4시간 이상 6시간 이하 43명(15.3%), 7시간 이상 162명(57.7%)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8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성	195	69.4
	남성	86	30.6
연령	20대	19	6.8
	30대	73	26.0
	40대	77	27.4
	50대 이상	112	39.9
학력	고졸이하	54	19.2
	전문대졸	105	37.4
	대졸이상	122	43.4
종교	없음	117	41.6
	개신교	40	14.2
	천주교	59	21.0
	불교	61	21.7
	기타	4	1.4
결혼상태	미혼	82	29.2
	기혼	199	70.8
시설유형	생활시설	175	62.3
	이용시설	106	37.7
서비스 대상	노인	83	29.5
	장애인	198	70.5
직종	사회복지사	198	70.5
	요양보호사	83	29.5
사회복지분야 경력	4년 이하	83	29.5
	5년 이상 8년 이하	62	22.1
	9년 이상 12년 이하	75	26.7
	13년 이상	61	21.7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 여부	있다	265	94.3
	없다	16	5.7
근무시간 중 서비스 대상자 대면시간	3시간 이하	76	27.0
	4시간 이상 6시간 이하	43	15.3
	7시간 이상	162	57.7

2. 변수들의 기술통계

1) 주요 변수들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의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인권감수성 수준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4.09점(SD=0.50)이었고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상황지각은 4.19점(SD=0.54), 결과지각은 4.13점(SD=0.58), 책임지각은 3.94점(SD=0.55)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수준에서 하위요인 중 상황지각능력이 가장 높으며 책임지각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인권과 관련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상황지각능력이 가장 높은 반면 인권과 관련한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인 결과지각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심리요인 중 공감능력은 평균 3.92점(SD=0.43)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3.76점(SD=0.56)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N=281)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권감수성 전체	1.93	5.0	4.09	.50
상황지각능력	1.80	5.0	4.19	.54
결과지각능력	1.60	5.0	4.13	.58
책임지각능력	1.80	5.0	3.94	.55
공감능력	2.47	5.0	3.92	.43
자아존중감	1.60	5.0	3.70	.56

2) 에피소드에 따른 인권감수성 하위요인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권감수성 지표 5개의 에피소드 항목별로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을 살펴보면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4.23점(SD=0.74), 남녀 평등권 4.19점(0.68), 노인의 행복추구권 4.06(SD=0.73), 신체의 자유권 4.06점(SD=0.74), 사생활권 3.88(0.74) 순이었다. 인권감수성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노인의 행복추구권에서는 결과지각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황지각능력과 결과지각능력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서는 결과지각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책임지각능력 역시 높은 수준이었으며 상황지각능력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남녀 평등권에서 상황지각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책임지각능력은 평균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생활권에서는 상황지각능력이 높았으며 책임지각능력은 평균 이하였다. 신체의 자유권에서는 상황지각능력과 책임지각능력이 같은 수준이었으며 결과지각능력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보면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생활시설 종사자임에도 사생활권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5>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하위영역 특성 (N=28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상황지각능력 (표준편차)	결과지각능력 (표준편차)	책임지각능력 (표준편차)
노인의 행복추구권	4.06(0.73)	4.04(0.84)	4.12(0.91)	4.02(0.89)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4.23(0.74)	4.17(0.89)	4.27(0.87)	4.25(0.90)
남녀 평등권	4.19(0.68)	4.40(0.80)	4.31(0.81)	3.86(1.01)
사생활권	3.88(0.74)	4.21(0.85)	3.99(0.94)	3.42(1.02)
신체의 자유권	4.06(0.77)	4.11(0.97)	3.96(0.95)	4.11(0.92)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감수성 전체 수준과 하위영역인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과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인권감수성은 공감능력($r=.179, p<.01$), 자아존중감($r=.182, p<.01$)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감수성 하위요인인 상황지각은 공감능력($r=.172, p<.01$), 자아존중감($r=.176, p<.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지역 역시 공감능력($r=.152, p<.05$), 자아존중감($r=.184, p<.01$) 그리고 책임지각 역시 공감능력($r=.162, p<.01$), 자아존중감($r=.133, p<.05$)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N=281)

변수	인권감수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인권감수성	1					
상황지각	.897***	1				
결과지각	.912***	.722***	1			
책임지각	.905***	.721***	.739***	1		
공감능력	.179**	.172**	.152*	.162**	1	
자아존중감	.182**	.176**	.184**	.133*	.258***	1

* $p < .05$, ** $p < .01$, *** $p < .001$

4. 변수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1) 직무요인, 통제변수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직무요인과 통제변수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이 두 개 있는 변수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이 세 개 이상 있는 변수는 ANOVA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학력($t=6.190, p<.01$), 서비스대상($t=-3.045, p<.01$), 직종($t=2.433, p<.05$)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학력의 경우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이하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대상에서는 노인보다 장애인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근무시설형태, 사회복지 분야 경력,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 여부, 서비스 대상자 대면 시간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요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검증 (N=281)

변인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195	4.60	.46	1.478
	여자	86	4.02	.58	
연령	20대	19	4.07	.52	1.020
	30대	73	4.16	.46	
	40대	77	4.10	.49	
	50대 이상	112	4.03	.53	
학력	고졸이하	54	3.93	.57	6.190**
	전문대졸	105	4.04	.55	
	대졸이상	122	4.19	.40	
	없음	117	4.10	.48	
종교	개신교	40	4.14	.46	1.513
	천주교	59	4.15	.48	
	불교	61	3.95	.59	
	기타	4	3.98	.35	
결혼상태	미혼	82	4.13	.49	.993
	기혼	199	4.07	.51	
근무시설형태	생활시설	175	4.05	.48	-1.286
	이용시설	106	4.13	.54	
서비스 대상	노인	83	3.95	.58	-3.045**
	장애인	198	4.14	.46	
직종	사회복지사	198	4.13	.47	2.433*
	요양보호사	83	3.97	.55	
사회복지분야 경력	4년 이하	83	4.02	.58	2.591
	5년 이상 8년 이하	62	4.03	.47	
	9년 이상 12년 이하	75	4.08	.53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 여부	13년 이상	61	4.24	.35	1.102
	있다	265	4.09	.49	
	없다	16	3.95	.64	
근무시간 중 서비스 대상자 대면시간	3시간 이하	76	4.16	.42	1.138
	4시간 이상 6시간 이하	43	4.06	.68	
	7시간 이상	162	4.06	.48	

* $p < .05$, ** $p < .01$, *** $p < .001$

2) 직무요인에 따른 상황지각능력 차이 검증

인권감수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직무요인과 관련된 변수 중 근무시설형태, 서비스대상, 직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와 같이 같은 변수내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요인과 관련 있는 변수내 집단간 인권감수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권감수성 하위요인 중 상황지각능력에 대해 직무요인 중 근무시설 형태, 서비스 대상, 직종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세가지 변인인 근무시설 형태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서비스 대상에서 노인과 장애인, 직종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문제나 상황을 인권과 관련한 것으로 인지하는 상황 지각능력에 있어서 근무시설형태와 서비스 대상, 직종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직무요인에 따른 상황지각능력 차이 (N=281)

변인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근무시설 형태	생활시설	175	4.16	.51	-.956
	이용시설	106	4.13	.59	
서비스 대상	노인	83	4.10	.58	-1.696
	장애인	198	4.22	.52	
직종	사회복지사	198	4.21	.53	1.254
	요양보호사	83	4.12	.56	

* $p < .05$, ** $p < .01$, *** $p < .001$

3) 직무요인에 따른 결과지각능력 차이

인권감수성 하위요인 중 결과지각능력에 대한 직무요인 중 근무시설 형태, 서

비스 대상, 직종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서비스대상($t=-4.309$, $p<.001$), 직종($t=3.627$, $p<.001$)따른 결과지각 능력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대상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 종사자가 노인복지분야 종사자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았으며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이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는 결과지각능력 수준에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높으며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9> 직무요인에 따른 결과지각능력 차이 (N=281)

변인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근무시설 형태	생활시설	175	4.09	.57	-1.478
	이용시설	106	4.20	.59	
서비스 대상	노인	83	3.90	.73	-4.309***
	장애인	198	4.22	.48	
직종	사회복지사	198	4.21	.50	3.627***
	요양보호사	83	3.94	.71	

* $p < .05$, ** $p < .01$, *** $p < .001$

4) 직무요인에 따른 책임지각능력 차이

인권감수성 하위요인 중 책임지각능력에 대해 직무요인 중 근무시설 형태, 서비스 대상, 직종내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서비스대상($t=-2.182$, $p<.05$)에 따른 결과지각능력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대상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자가 노인복지분야 종사자보다 결과지각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능력은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척도이므로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자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보다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직무요인에 따른 책임지각능력 차이 (N=281)

변인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근무시설 형태	생활시설	175	3.90	.54	-1.031
	이용시설	106	3.98	.55	
서비스 대상	노인	83	3.82	.62	-2.182*
	장애인	198	3.98	.51	
직종	사회복지사	198	3.97	.52	1.648
	요양보호사	83	3.85	.60	

* $p < .05$, ** $p < .01$, *** $p < .001$

5) 직무요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인권감수성 전체에 대해 직무요인 중 근무시설 형태, 서비스 대상, 직종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서비스대상($t=-3.045$, $p<.01$), 직종($t=-2.433$, $p<.05$)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대상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자가 노인복지분야 종사자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직무요인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 (N=281)

변인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근무시설 형태	생활시설	175	4.05	.48	-1.286
	이용시설	106	4.13	.54	
서비스 대상	노인	83	3.95	.58	-3.045**
	장애인	198	4.14	.46	
직종	사회복지사	198	4.13	.47	2.433*
	요양보호사	83	3.97	.55	

* $p < .05$, ** $p < .01$, *** $p < .001$

5. 인권감수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상황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제변수,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인권감수성 하위 요인 중 상황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는 1.056에서 1.874사이로 모두 10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Durbi-Watson 통계량은 2.100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1은 통제변수만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델설명력은 5.1%였다($F=2.99$, $p<.05$). 변인 중 성별($\beta=-.172$, $p<.01$)은 부(-)적인 영향을, 학력($\beta=.176$, $p<.01$)에서 정(+)의 영향을 상황지각능력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황지각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상황지각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2는 통제변수와 직무요인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beta=-.174$, $p<.01$)과 학력($\beta=.1505$, $p<.05$)이 상황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모든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2.56$, $p<.001$) 설명력은 가장 높은 10.3%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앞선 모델에서와 같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상황지각능력이 높았다. 심리요인에서는 공감능력($\beta=.147$, $p<.05$)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상황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81)

구분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4.031***		3.964***		2.900***	
통제 변수	성별	-.200	-.172**	-.203	-.174**	-.171	-.147*
	연령	.002	.004	-.010	-.017	-.005	-.009
	학력	.125	.176**	.107	.150*	.096	.134
	종교	-.050	-.046	-.055	-.051	-.083	-.076
	결혼여부	-.060	-.051	-.077	-.065	-.115	-.098
직무 요인	근무시설 형태			-.031	-.028	-.090	-.081
	서비스대상			.025	.021	.038	.032
	사회복지분야경 력			.041	.086	.047	.098
	인권교육 수강 경험여부			.074	.032	.019	.008
	근무시간 중 서비스대상자대 면시간			-.006	-.010	-.009	-.014
심리 요인	공감능력					.183	.147*
	자아존중감					.121	.126
		R ² =.051		R ² =.061		R ² =.103	
		Adj. R ² =.034		Adj. R ² =.026		Adj. R ² =.063	
		F=2.99*		F=1.74		F=2.56***	

* $p < .05$, ** $p < .01$, *** $p < .001$

더미변수 성별: 남자0, 여자 1, 종교: 없음0, 있음1, 결혼여부: 미혼0, 기혼1, 근무시설형태: 생활시설0, 이용시설1, 서비스대상: 노인0, 장애인1, 인권교육수강경험여부: 있음0, 없음1

2) 결과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권감수성 하위요인인 결과지각에 통제변수,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는 1.056에서 1.874사이로 모두 10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Durbi-Watson 통계량은 2.18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1은 통제변수만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델설명력은 7.2%였다($F=4.29, p<.01$). 변인 중 성별($\beta=-.129, p<.05$)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 남성이 여성보다 결과지각능력이 높았으며 학력($\beta=.019, p<.001$)에서 정적인 영향을 결과지각능력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통제변수와 직무요인을 같이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델설명력은 11.5%였다($F=3.51, p<.001$). 통제변수 중 성별($\beta=-.134, p<.05$)과 학력($\beta=.010, p<.05$)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무요인 중에서는 서비스대상($\beta=.175, p<.05$)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3에서는 모든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06, p<.001$) 설명력은 가장 높은 15.4%였다. 통제변수 중 학력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요인 중에서는 서비스 대상($\beta=.187, p<.05$)이, 심리요인에서는 공감능력($\beta=.121, p<.05$)과 자아존중감($\beta=.141, p<.05$)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결과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81)

구분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3.900***		3.465***		2.410***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163	-.129*	-.169	-.134*	-.139	-.111
	연령	-.035	-.058	-.032	-.054	-.030	-.051
	학력	.184	.239***	.012	.169*	.116	.151*
	종교	.022	.019	-.083	.010	-.013	-.011
	결혼여부	-.054	-.042	.130	-.065	-.124	-.097
직무 요인	근무시설 형태			-.014	-.011	-.078	-.065
	서비스대상			.223	.175*	.238	.187*
	사회복지분야경 력			.057	.111	.063	.121
	인권교육 수강 경험여부			.170	.068	.110	.044
	근무시간 중 서비스대상자대 면시간			.055	.082	.052	.078
심리 요인	공감능력					.163	.121*
	자아존중감					.146	.141*
		R ² =.072		R ² =.115		R ² =.154	
		Adj. R ² =.055		Adj. R ² =.082		Adj. R ² =.116	
		F=4.29**		F=3.51***		F=4.06***	

* $p < .05$, ** $p < .01$, *** $p < .001$

더미변수 성별: 남자0, 여자 1, 종교: 없음0, 있음1, 결혼여부: 미혼0, 기혼1, 근무시설형태: 생활시설0, 이용시설1, 서비스대상: 노인0, 장애인1, 인권교육수강경험여부: 있음0, 없음1

3) 책임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제변수,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인권감수성 하위요인 중 책임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는 1.056에서 1.874사이로 모두 10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Durbi-Watson 통계량은 2.076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1은 통제변수만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델설명력은 4.4%였다($F=2.52, p<.01$). 변인 중 성별($\beta=-.124, p<.05$)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남성이 더 책임지각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beta=.178, p<.01$)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책임지각능력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책임지각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2는 통제변수와 직무요인을 같이 투입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델설명력은 7.3%였다($F=2.14, p<.05$). 통제변수 중 성별($\beta=-.131, p<.05$)과 학력($\beta=-.021, p<.05$)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해당 모형에서 처음으로 학력이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요인 중에서는 사회복지분야 경력($\beta=.179,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3에서는 모든 변수를 투입하였고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F=2.70, p<.001$) 설명력은 10.8%였다. 통제변수 중 학력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요인 중에서는 사회복지분야경력($\beta=.191, p<.01$)이, 심리요인에서는 공감능력($\beta=.153, p<.05$)만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책임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81)

구분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3.787***		3.620***		2.612***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148	-.124*	-.156	-.131*	-.124	-.104
	연령	-.016	-.028	-.033	-.058	-.025	-.045
	학력	.129	.178**	.113	-.021*	.107	-.047*
	종교	-.002	-.002	-.023	.156	-.052	.147
	결혼여부	-.067	-.056	-.118	-.098	-.152	-.126
직무 요인	근무시설 형태			-.007	-.006	-.055	-.049
	서비스대상			.022	.018	.033	.027
	사회복지분야 경력			.087	.179**	.093	.191**
	인권교육 수강 경험여부			.002	.001	-.044	-.019
	근무시간 중 서비스대상자대 면시간			.036	.057	.033	.052
심리 요인	공감능력					.194	.153*
	자아존중감					.086	.088
		R ² =.044		R ² =.073		R ² =.108	
		Adj. R ² =.026		Adj. R ² =.039		Adj. R ² =.068	
		F=2.52*		F=2.14*		F=2.70**	

* $p < .05$, ** $p < .01$, *** $p < .001$

더미변수 성별: 남자0, 여자 1, 종교: 없음0, 있음1, 결혼여부: 미혼0, 기혼1, 근무시설형태: 생활시설0, 이용시설1, 서비스대상: 노인0, 장애인1, 인권교육수강경험여부: 있음0, 없음1

4)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5>와 같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는 1.087에서 1.874사이로 모두 10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Durbi-Watson 통계량은 2.083에서 2.132사이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1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만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델설명력은 6.5%였으며($F=3.83$, $p<.01$) 변인 중 성별($\beta=-.156$, $p<.05$)은 부(-)의 영향을, 학력($\beta=.220$, $p<0.01$)은 정(+)의 영향을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직무요인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2.74$, $p<.01$) 모델설명력은 9.2%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모형1에서와 동일하게 성별과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요인에서는 서비스대상($\beta=.082$, $p<.05$)과 사회복지경력($\beta=.062$, $p<.01$)이 인권감수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모든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3.60$, $p<.001$) 설명력은 가장 높은 13.9%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과 학력이 앞선 모델에서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요인에서는 모델2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서비스대상과 사회복지분야 경력 중 사회복지분야 경력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요인에서는 공감능력($\beta=.155$, $p<.05$)과 자아존중감($\beta=.131$, $p<.05$)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분야 경력이 많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5>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81)

구분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상수)	3.906***		3.683***		2.641***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성별	-.170	-.156*	-.176	-.162*	-.145	-.133*
	연령	-.016	-.031	-.025	-.048	-.020	-.039
	학력	.146	.220**	.117	.175*	.106	.159*
	종교	-.010	-.010	-.022	-.022	-.049	-.048
	결혼여부	-.060	-.055	-.093	-.084	-.130	-.118
	근무시설 형태			-.017	-.017	-.074	-.072
	서비스대상			.090	.082*	.103	.093
직무 요인	사회복지분야 경력			.062	.139*	.068	.151*
	인권교육 수강 경험여부			.082	.038	.028	.013
	근무시간 중 서비스대상자대 면시간			.028	.038	.026	.044
	심리 요인	공감능력				.180	.155*
	자아존중감				.117	.131*	
		R ² =.065		R ² =.092		R ² =.139	
		Adj. R ² =.048		Adj. R ² =.059		Adj. R ² =.100	
		F=3.83**		F=2.74**		F=3.60***	

* $p < .05$, ** $p < .01$, *** $p < .001$

더미변수 성별: 남자0, 여자 1, 종교: 없음0, 있음1, 결혼여부: 미혼0, 기혼1, 근무시설형태: 생활시설0, 이용시설1, 서비스대상: 노인0, 장애인1, 인권교육수강경험여부: 있음0, 없음1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인권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인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조사를 위해 제주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8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직무특성으로, 성별은 여성이 69.4%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50대 이상이 39.9%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4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70.8%로 많았으며 시설유형은 생활시설이 62.3%, 이용시설이 37.7%를 차지했다. 서비스대상은 노인이 29.5%, 장애인이 70.5%였다. 직종은 사회복지사가 70.5%, 요양보호사가 29.5%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경력은 4년 이하가 29.5%로 가장 많았다. 인권 관련 교육 수강 여부는 대부분 있었으며 근무시간 중 서비스 대상자 대면 시간은 7시간 이상이 가장 많은 57.5%를 차지했다.

둘째, 연구대상자인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5점 만점에 4.09(SD=.50)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상황지각능력은 4.19(SD=.54), 결과지각능력은 4.13(SD=.58), 책임지각능력은 3.94(SD=.5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에서 상황지각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요인 중 책임지각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다수의 선행연구(서지숙, 2016; 이은희, 2017; 김미정, 2017)와는 다른 결과였으며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직무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학력과 서비스대상, 직종이 인권감수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이하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대상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가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학력, 사회복지경력과 심리적 요인으로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감수성 하위요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상황지각능력에는 성별과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지각에는 학력, 서비스대상,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에서는 학력, 사회복지분야 경력,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권감수성 하위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의 수준과 하위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요인, 심리적 요인인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학력, 직무요인으로는 사회복지근무 경력, 심리적 요인으로는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을 지각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에 의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영역의 인권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 수준을 알아보는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인권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을 지각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에 의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 하위요인 수준은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황지각능력은 문제를 인권상황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므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각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인권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능력인 책임지각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대부분 인권감수성에 대한 연구는 그 수준을 알아보는 탐색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책임지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력, 근무경력, 공감능력, 자아존중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인 요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행되는 인권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획일적인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인권감수성에 영향이 있는 요인들을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교육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인권감수성 하위요인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황지각능력에는 성별과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지각에는 학력, 서비스대상,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에서는 학력, 사회복지분야경력,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 하위요인 중 책임지각능력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조사에서는 상황지각능력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요인별 수준은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현장에 있는 종사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신고가 없이는 은폐되기 쉬운 상황이므로 책임지각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지각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사회복지분야 경력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감수성이 개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은 물론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권문제에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제언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제주 지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표는 도덕적 태도와 민감성 측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실제 자신의 생각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검사 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의 영향 요인 분석시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 요인, 심리적 요인 중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요인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변수가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인권감수성의 영향요인으로 심리사회적 요인과 직무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지영. 2002. “인권에 대한 인지능력과 정서적 공감의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기복지재단. 20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연구』.
- 경기복지재단. 2020. 『인권친화적 사회복지시설 연구 방안 연구』.
- 고명석. 2008.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권교육 기본용어』.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사회복지분야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 기순임. 2011.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간성과 노인인권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연. 2005. “소집단 토의학습이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병. 2016.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7(1):91-112.
- 김기수. 2007.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이 실천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선. 2014.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의사결정유형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17.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식. 2019.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섭. 2019. “경찰관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중. 2014. “형사절차와 인권보장: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인

- 권교육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2(2): 81-107.
- 김영환. 2016. “학급차원의 통합교육 유·무에 따른 비장애학생의 장애수용태도와 인권감수성의 관계”.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나. 2015. “소년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 교육적 함의”. 『소년보호연구』 28(2): 31-56.
- 김윤희·김진숙. 2017. “공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상담학회』 18(5): 61-84
-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 김재민. 2017.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고찰: 경찰관과 대학생의 인권보호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2): 29-62.
- 김정아·정정희. 2015. “보호직공무원의 다문화 인식과 인권감수성 관계 연구”. 『보호관찰』 15(2): 171-191.
- 김지호. 201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중섭. 2001.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 『한국지역사회의 인권』 2001(1): 15-48.
- 김충희. 2004. “정신보건영역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10.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 109-132.
- 김홍수.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학대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주현. 2008. “정신보건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치료집단과 비치료 집단 간의 비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소현·김봉선. 201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의식 형성과정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7: 43-63.
- 서지숙. 201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직무만족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옥임. 2006. “초등학교에서의 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이 일반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선영. 2016. “아동의 인권침해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인권상황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형은. 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이 사회복지 옹호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 2020. “취업준비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관식. 201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규란. 2012.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래. 2012.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애·이혜원. 2009. “가출청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사회복지』 16: 1-29.
- 이연우. 2011.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순. 2017.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사례옹호,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경로 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아·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13-226.
- 이은희. 2017.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하늬. 2014.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인권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바론.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 2006.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3: 59-87.

- 정승재. 2008.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인권의 이해”.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43-56.
- 정원주. 2008.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인권상황 지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 169-187.
- 정의식. 2019.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의롭. 2011. “경찰관의 인권 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 127-166.
- 조윤정. 2006.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실제 인권 옹호 경향과의 상관성 조사 연구: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효제. 2020. 『인권의 최전선』. 교양인.
- 주효경. 2012. “인권감수성 훈련이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2(3): 169-179.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2019 장애인학대현황 보고서』
- 천우영. 2016. “다문화 아버지 정서지능이 유아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141-163.
- 최 현. 2008. 『인권』. 책세상.
- 하경희·강병철. 2009.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2): 183-202.

Abstract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Welfare Agency Workers in Jeju

You Yong-h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welfare agency workers in Jeju Island. It also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job, and psychological factors including empathy ability and self-esteem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its subfactors including situation, outcome, and responsibility perception ability. For these purposes,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survey with 305 practition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cluding social workers and care workers at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resident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nur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Jeju to collected data. A total of 281 questionnaires were used in analysis after the exclusion of 24 containing insincere answers. Collected data was put to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25.0 program.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actition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Jeju scored 4.09(SD=.50) out of 5 points in human rights sensitivity. Their scores were highest in situation perception ability at 4.19(SD=.54), which was followed by outcome perception ability at 4.13(SD=.58) and responsibility perception ability at 3.94(SD=.55) in the ord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ractition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Jeju had sensitive perceptions of situations in which human rights issues were relatively involved.

Secondly,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and job factors on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found that educational backgrounds, service targets, and types of occup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it. The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the highest in those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who were followed by those who graduated from community college and high school in the ord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igher their educational backgrounds were, the higher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As for service targets, the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was higher in those who worked at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an facilities for the elderly. As for types of occupation, social workers had higher human rights sensitivity than care workers.

Finally, psychological factors including empathy ability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practition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Jeju along with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s, and social welfare career. Of the subfactor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situation perception ability was influenced by

gender and empathy ability. Educational backgrounds, service targets, empathy ability,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impacts on outcome perception. Responsibility perception was affected by educational backgrounds, career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empathy ability. These findings show that different factors had impacts on the subfactor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eded to conduct ongoing researches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cross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 Jeju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by taking into account its influential factors including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s, and career. It is also needed to develop an educational curriculum to enhance empathy ability and self-esteem as influential psychological factors and design an institutional measure for practitioners at the site of social welfare to take active interest in and make an intervention in human rights issues.

**Key words : Welfare Agency Workers, Human Rights Sensitivity,
Empathy ability, Self-esteem**

<부록>

설문지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모든 질문사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교수 남진열

■ 연구자 :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유용한

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성 별	①여성 ②남성
연 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학 력	①고졸이하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 이상
종 교	①없음 ②개신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결혼 상태	①미혼 ②기혼
근무시설 형태	①생활시설 ②이용시설
서비스 대상	①노인 ②장애인
직 종	①사회복지사 ②요양보호사 ③기타()
사회복지분야 경력	_____년
인권관련 교육 수강 경험 여부	①있다 ②없다
근무시간 중 서비스 대상자 대면시간	일평균()시간

Ⅱ. 사회문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5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족회의>

정00 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65세로,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줄곧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왔다. 아들 내외는 효자로 소문날 만큼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머니는 여행을 함께 보낼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할아버지로부터 얼마전에 청혼을 받은 상태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재혼을 하겠다고 언지를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자식들은 가족 회의를 열었는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1. 할머니는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1.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2. 할머니가 재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					
2. 할머니가 의미 있는 여행을 보낼 것이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할머니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가족들의 결정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2.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					

<② 김씨의 구속>

밤늦게 귀가하던 한 남자가 괴한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범인은 얼굴에 복면을 한데다가 뚜렷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한 목격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범인으로부터 보복 당할까봐 신고를 못했는데,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김씨와 체격과 용모가 비슷한 것 같다는 제보를 하였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도망가기 전에 붙잡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며 따라서 구속되었던 김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1. 일단 목격자의 말을 믿고 김씨가 도망가기 전에 체포하여 구속해두는 것이 우선이다.					
2. 확실한 증거 없이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포,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범인일지도 모르는 김씨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할 수 있다.					
2. 확실한 증거없이 체포, 구속함으로써 김씨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은 놓치지 전에 일단 체포하여 구속한다.					
2. 좀 더 정황을 알아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구속한다.					

<③ 감원대상>

정숙씨는 S여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5년전 00주식회사에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제품 디자인실에서 열심히 일하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사내에서 만난 동료직원과 결혼을 했다. 어느 날 정숙씨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5~600명의 사원이 일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며칠 후 상사는 정숙씨를 자리로 부른 후 현재 직원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가정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남자사원보다는 정숙씨처럼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일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사직을 권한다. 상사와의 면담 후 자리로 돌아온 정숙씨는 고민에 빠진다.

1. 위의 감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1. 남성가장의 실직은 많은 가정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					
2. 여성만을 감원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2. 다음은 위와 같은 감원이 실시될 때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남성가장의 실직을 막아서 가정경제의 충격이 덜 심할 것이다.					
2.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 직원이 일할 권리와 자기실현의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3. 다음은 고민에 빠진 정숙씨가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정숙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회사 경영난상 어쩔 수 없으므로 사직하고 퇴직금으로 새 일을 시작한다.					
2.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불합리한 감원 원칙에 항의한다.					

<④ 국가 의료정보 센터 설립>

다음 소식은 국가 의료정보 센터 설립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20**년까지 국가 의료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전 국민의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 처방, 투약 기록을 의료정보센터로 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의료정보는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방문하였을 때 더욱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수집된 의료정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데에 활용되어 국민 건강증대와 수명연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1. 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1. 정부는 국민건강 증대를 위하여 국민의 의료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2. 의료정보 유출로 야기되는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2. 다음은 의료정보센터의 설립 후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다음 두가지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검사나 진료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한 진단을 도울 수 있다.					
2. 알리고 싶지 않은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3. 당신은 국가 의료정보센터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국민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적극 지지한다.					
2.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반대한다.					

<⑤ 의사의 고민>

신00씨는 희귀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그동안 신씨를 담당해왔던 의사의 말에 따르면, 신씨가 임신을 할 경우 유전병이 태아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동일한 병을 가진 장애아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신씨는 성에 대한 관념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부족하여, 신씨의 부모는 늘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신씨의 부모는 차라리 딸에게 불임수술을 시켜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의사에게 수술 부탁을 하였다. 이 부탁을 받은 의사는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1. 동일한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					
2. 신씨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체의 일부를 수술해서는 안 된다.					

2. 다음은 불임수술을 해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유전병을 가진 자녀를 낳은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자녀를 낳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자녀의 불행을 막기위해 불임수술을 시켜준다.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음을 부모에게 주지시킨다.					

Ⅲ. 다음은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과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보
 시고 해당되는 칸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놓고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얼굴 표정을 보면,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며 기분을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빨리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한숨과 같은 상대방의 몸짓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감정이 드러나면 바로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11	상대방이 우울해하면 나도 함께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속상해하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나도 속상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도 함께 무거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상대방이 심각한 고민을 말할 때, 그 심정이 어떨지 같이 느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상대방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 그 감정을 같이 느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나누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답답한 심정을 말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의 감정에 맞추어 느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관심 있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맞장구를 치며 호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 쪽으로 몸을 가까이 기울이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진지한 표정과 자세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대화 분위기에 어울리는 목소리 톤으로 맞춘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칸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